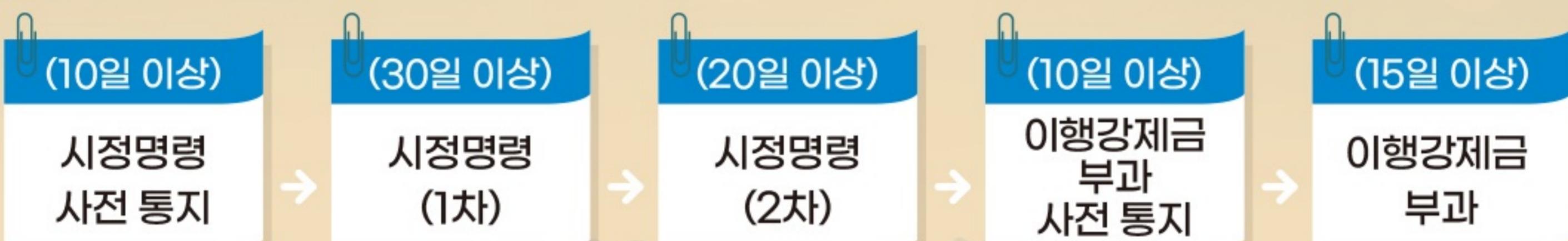


건전한 건축문화
함께 만들어가요!

위반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안내문

우리 구에서는 사용승인(준공)된 건축물의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고자 「건축법」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불법건축물은 화재 · 붕괴의 원인이 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위반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

● 불법 건축행위 행정조치



● 건축물의 유지·관리 의무주체

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 (건축법 제35조)

● 불법건축행위 주요 사례

1) 무단 신축, 증축

- 당초 허가, 신고 되지 않은 높이 1m 이상의 건축물 설치
- 높은 층고를 이용한 중층(복층) 설치
- 자연발코니에 판넬 / 새시로 지붕 설치하여 확장사용
- 대지 내 빈 공간에 천막, 철주 등 가설물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
- 지상 1층 필로티 및 주차장에 무단증축 또는 무단용도변경

2) 무단 대수선

- 세대간 경계벽 증설 또는 해체하여 가구수 변경
- 방화구역 훼손 및 방화셔터 설치 공간 무단점유
- 기둥, 보, 계단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임의수선, 증설, 해체

3) 기타

- 근린생활시설 ↔ 주택용도로 임의변경 사용



이행강제금?

-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1회 반복하여 부과
-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의무 불이행 또는 체납시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



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(청학동)
영도구청 건축과 ☎ 051) 419-4584~5